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95
----------	-----------

제안년월일 : 2019년 2월 25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의 본문에서 각각의 “공공기관”을 “집행기관”으로 수정해 관계 법령과의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일반적인 정의로 수정하는 한편, 조례안의 시행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입법 취지를 강화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조례의 본문에서 각각 “공공기관”을 “집행기관”으로 수정해 관계 법령과의 용어의 혼선을 방지 함(안 제1조).
-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용어를 일반적인 정의로 수정함(안 제2조 제2호).

- 개정안은 정책연구용역 공개 이행여부를 출자·출연기관에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이 없도록 서울시 모든 집행기관에 적용되도록 수정함(안 제6조).
- 시스템 개발과 기술적 문제해결을 위해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로 수정함(안 부칙).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게 함으로써”를 “서울특별시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함으로써”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공공기관”을 “집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안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행기관이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집행기관과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된 정책연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공공기관은”을 “집행기관은”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를 “집행기관의”로 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평가 등) 시장은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공개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각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안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u>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게 함으로써</u> 정책연구용역의 중복수행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공공기관”</u>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p> <p>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p> <p>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사 및 공단</p> <p>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p> <p>2. <u>“정책연구용역”</u>이란 <u>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등에 관한 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 지적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책·시책·사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u></p>	<p><u>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함으로써</u> 정책연구용역의 중복수행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집행기관”</u>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p> <p>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p> <p>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사 및 공단</p> <p>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p> <p>2. <u>“정책연구용역”</u>이란 <u>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u></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공공기관</u>이 실시한 정책연구 용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u>공공기관과</u>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된 정책연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시스템의 명칭은 달리 정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공개) ① <u>공공기관</u>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5조(비공개 대상 등) ① (생략) ②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u>공공기관의</u>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6조(평가 등) <u>시장은 공공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기관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공개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각 공공기관에</u></p>	<p>제3조(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집행기관</u>이 실시한 정책연구 용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u>집행기관과</u>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된 정책연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후단 삭제></p> <p>② (제정안과 같음)</p> <p>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공개) ① <u>집행기관</u>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 ③ (제정안과 같음)</p> <p>제5조(비공개 대상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u>집행기관의</u>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p> <p>③ (제정안과 같음)</p> <p>제6조(평가 등) <u>시장은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공개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각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u></p>

제 정 안	수 정 안
<p>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u>공포한 날부터 시행</u>한다.</p>	<p>제7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u>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 행</u>한다.</p>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중복수행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사 및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2.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행기관이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집행기관과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된 정책연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공개) ① 집행기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기관은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제3조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기관은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제3조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비공개 대상 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집행기관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 보류 대상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평가 등) 시장은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공개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각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